

제274회 거창군의회 제2차정례회

제3차 산업건설위원회(2023.12.12.)

2024년도 기금운용 계획(안) 검 보 고 서



산업건설위원회

[전문위원 전 병 준]

<의안번호 제2023 - 157호>

- 2024년도 기금운용 계획(안) -- 검 토 보 고 서 -

1. 검토경과

가. 제출일자 : 2023. 11. 21.

나. 제 출 자 : 거창군수

다. 회부일자 : 2023. 11. 28.

2. 제안사유

「지방자치법」제159조 및 각 기금별 기금 설치·운용조례의 규정에 따라 거창군 각 부서에서 설치·운용 중인 기금에 대하여 「지방자치법」제47조 제1항에 따라 거창군에서 2024년도 기금 운용계획을 수립하여 거창군의회의 승인을 받기 위함.

3. 2024년도 기금개요

가. 관련근거

- O「지방자치법」제159조: 재산과 기금의 설치
- O 「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」 제8조: 기금운용계획 및 결산

나. 운용방침

○ 지방기금은 지방자치단체의 특수한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예산총계주의 등 지방재정법령의 일반적인 제약에서 벗어나 좀 더 탄력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세입·세출예산에 의하지 않고 특정사업을 위해 보유·운용하는 특정 자금으로

- O 자금 운용체계를 총괄부서와 운영부서로 이원화하여 책임성· 투명성 확보
 - 총괄부서 : 기획예산담당관
 - 운용부서 : 각 기금관리운용 과·직속기관·사업소
- O 각 기금의 설치목적에 맞도록 기금을 관리·운용

4. 기금운영 계획안 규모

(단위: 천원)

기 금 명	2023년도 말 조 성 액 a	2024 기금운 (수 입 ⓑ	.년도 중 계획안 지 출 ⓒ	2024년도 말 조 성 액 d=@+b-c	증 감
합계 (3개)	4,419,656	889,860	913,600	4,395,916	△23,740
재난관리기금	2,970,995	828,000	885,000	2,913,995	△57,000
옥외광고발전기금	329,154	26,000	8,600	346,554	17,400
체육진흥기금	1,119,507	35,860	20,000	1,135,367	15,860

5. 검토의견

■ 재난관리기금(p75)

- <u>재난관리기금은</u> 「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」 제67조에 따라 1998. 8. 18.(조례 제1481호) 「거창군 재난관리기금 운용 및 관리조례」를 제정하여 재난예방시설 설치 및 복구에 소요되는 재원을 조달하기 위한 것이며,
- <u>재난관리기금의 매년도 최저적립액은</u> 일반회계 3년간 보통세수입결산 평균액의 100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을 적립하도록 하고 있어, 2024년도 법정 적립금은 일반회계 3년간 보통세 수입결산 평균액의 100분의1 이상(362,647천원)인 363,000천원을 포함하여 적립한 금액임.

O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 중 수입과 지출 계획은

(단위: 천원)

수입계획				
항목	'24년	전년도	증감	비고
84	수입액	수입액	万 召	
합계	2,913,995	4,092,657	$\triangle 1,178,662$	
전입금	363,000	320,000	43,000	
보조금	425,000	232,173	265,000	
예치금 회수	2,085,995	3,510,484	$\triangle 1,424,489$	
이자수입	40,000	30,000	10,000	

지출계획				
첫 무	'24년	전년도	スル	비고
항목	지출액	지출액	증감	
합계	2,913,995	4,092,657	-1,178,662	
비융자성 사업비*	850,000	320,000	530,000	
예치금	2,028,995	3,738,057	-1,709,062	
기타지출**	35,000	34,600	400	

- * 재난마을방송장비 교체사업(240,000), 자동수위관측장비 교체 사업 (80,000), 산사태예경보시스템 구축(410,000)
- * 도비보조사업 집행잔액반납(30,000)
 - <u>재난관리기금은</u> 법률 및 조례에 의하여 조성·운영되어야 하며, 기금사업의 목적 및 사용용도인 재해 예·경보 시스템 설치 및 보수·보강, 선제적 재난대응 사업, 법정 적립금 확보 등에 효율적 으로 관리·운영 되어야 할 것임.

■ 옥외광고발전기금(p85)

○ <u>옥외광고발전기금은</u> 「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」 제6조의2 및 「거창군 옥외광고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」에 따라 옥외광고물의 정비를 통하여 아름답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2010. 3. 9. 조례(조례 제1967호)로 제정되었음.

O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 중 수입과 지출 계획은

수입계획				
항목	'24년	전년도	증감	비고
% '	수입액	수입액	о ті	
합계	355,154	248,628	106,526	
예치금회수	329,154	221,628	107,526	
이자수입	3,000	4,000	-1,000	
기타수입	23,000	23,000	_	
국도비보조금			_	_

지출계획				
첫), 및	'24년	전년도	スコ	비고
항목	지출액	지출액	증감	
합계	355,154	248,628	106,526	
비융자성사업*	8,600	8,600		
예치금	346,554	240,028	106,526	

- * 불법광고물 예방 홍보물(2,800), 광고업자 교육(1,800), 불법, 무연고 간판 철거(4,000)
 - <u>옥외광고발전기금은</u> 법률 및 거창군 조례에 의하여 조성·운영 되어야 하며, 간판개선사업, 무연고·불법·위험 광고물 단속철거, 현수막 게시대 보수, 옥외광고업자에 대한 교육 및 지원 등 거창군 지역실정에 맞는 사업을 면밀히 검토하여 추진되어 야 할 것임.

■ 체육진흥기금(p93)

○ <u>체육진흥기금은</u> 「거창군 체육진흥기금 조성 운용조례」에 따라 거창군 체육진흥에 필요한 사업과 활동을 지원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1995. 4. 2. 조례(조례 제1358호)로 제정되었음.

O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 중 수입과 지출 계획은

수입계획				
항목	'24년	전년도	증감	비고
8두	수입액	수입액	一 石	
합계	1,135,367	1,129,548	5,819	
예치금회수	1,099,507	1,112,856	-13,349	
이자수입	35,860	16,692	19,168	

지출계획				
항목	'24년	전년도	증감	비고
9 -	지출액	지출액	중 설	
합계	1,135,367	1,129,548	5,819	
비융자성사업	20,000	20,000		
예치금	1,115,367	1,109,548	5,819	

- * 우수 선수 육성사업 등 지원(20,000), 체육진흥기금 예치 (1,115,367)
 - O 체육진흥기금은 거창군 조례에 의하여 조성·운영 되어야 하며, 군 체육진흥을 위한 사업, 우수선수 육성 사업, 군민체육대회 개최, 도민체육대회 참가 등 체육진흥을 위한 사업을 면밀히 검토하여 추진되어야 할 것임.

6. 참고자료

▶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

제8조(기금운용계획 및 결산)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고,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.

-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안과 기금결산보고서를 회계 연도마다 각각 세입·세출 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지방의회에 제출하여 의결 을 받아야 한다.
- ③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동의 없이 기금운용계획안의 주요 항목 지출금액을 늘리거나, 새로운 비목(費目)을 설치할 수 없다.
- ④ 기금운용계획안 및 결산보고서의 작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▶ 지방자치법

제47조(지방의회의 의결사항) ① 지방의회는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.

- 1. 조례의 제정·개정 및 폐지
- 2. 예산의 심의·확정
- 3. 결산의 승인
- 4. 법령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사용료·수수료·분담금·지방세 또는 가입금의 부과 와 징수
- 5. 기금의 설치·운용
- 6.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재산의 취득·처분
- 7.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시설의 설치·처분
- 8. 법령과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예산 외의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
- 9. 청원의 수리와 처리
- 10. 외국 지방자치단체와의 교류협력에 관한 사항
- 11. 그 밖에 법령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
- ②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의 사항 외에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의회에서 의결되어야 할 사항을 따로 정할 수 있다.

▶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

제67조 (재난관리기금의 적립) ①지방자치단체는 재난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매년 재난관리기금을 적립하여야 한다.

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난관리기금의 <u>매년도 최저적립액은 최근 3년 동안의</u> 지방세법에 의한 보통세의 수입결산액의 평균연액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.

▶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관한 법률

제6조의2(옥외광고발전기금의 설치) ① 시·도지사 및 시장등은 광고물등의 정비와 옥외광고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옥외광고발전기금(이하 "기금"이라 한다)을설치·운영한다. <개정 2016.1.6.>

- ②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마련한다. <개정 2016.1.6.>
- 1. 제6조제4항에 따른 옥외광고사업 수익금 중 시·도(특별자치시 및 특별자치도 를 포함한다. 이하 이 조에서 같다) 또는 시·군·자치구에 배분되는 수익금
- 2. 제17조에 따른 수수료
- 3. 제20조에 따른 과태료
- 4. 제10조의3에 따른 이행강제금
- 5. 일반회계 또는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
- 6. 국가 또는 시·도로부터의 보조금
- ③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사용한다. <개정 2016.1.6.>
- 1. 옥외광고산업의 진흥
- 2. 광고물등의 정비·개선
- 3. 옥외광고사업자 등에 대한 교육 및 지원
- 4. 광고물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
- 5. 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업과 관련하여 시·도 또는 시·군·자치구 조 례로 용도를 정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추진하는 사업
- ④ <u>기금의 운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시·도 또는 시·군·자치구 조례로 정한다.</u> <개정 2016.1.6.>

▶ 거창군 옥외광고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

제2조(옥외광고발전기금의 용도) ① 「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 흥에 관한 법률」제6조의2제3항제5호에 따라 조례로 거창군 옥외광고발전기금 (이하 "기금"이라 한다)의 용도를 정하여 거창군(이하 "군"이라 한다)이 추진 하는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
- 1. 경관개선사업
- 2. 간판시범거리 조성사업
- 3. 간판 제작·설치 지침 개발사업
- 4. 그 밖에 거창군수(이하 "군수"라 한다)가 옥외광고와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
- ② 기금은 목적 외로 사용할 수 없다.

제3조(기금의 운용·관리) ① 기금은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세입·세출예산 외 현금계좌로 관리한다.

- ② 기금은 군 금고나 이자율이 높고 안전한 예금으로 예치·관리한다.
- ③ 기금은 적립기금과 운용기금으로 구분하고, 별도의 계좌를 설치하여 관리한다.